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23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623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9.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전부개정 되어「인구전략기본법」으로 2026. 9. 10. 시행 예정이며, 개정 법률은 제3조(정의)에서 “저출생”을 법적 용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산을 장려의 대상으로 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저출생 현상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출산 장려”에서 “저출생 대응”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함(안 제명).
- 제1조(목적) 중 “출산을 장려“를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으로 함(안 제1조).

- 제2조제2호 중 “출산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그 정의를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정에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함(안 제2조제2호).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사업)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제8조(협약체결), 제9조(홍보) 중 “출산 장려“를 각각 “저출생 대응“으로 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 제5조제1항제1호 중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생축하금 지급“으로 함(안 제5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류옥화)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앙부처 및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단순한 ‘출 산 장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돌봄,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부합하며, 「인구전략기본법」의 개정 및 2026.9.10.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본문에 산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용어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시 기 시행중인 관련 지침이나 서식·홍보물 등에서도 혼선이 없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구민들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과 별도의 예산수반 사항도 없으므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23

발의연월일: 2026. 8. 27.
발 의 자: 박용준 의원
찬 성 자: 강정수, 설재영, 김동성, 이원배, 신진미, 함미정, 김태민,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최혜연, 양유환, 김명현, 김세원, 송용석, 최미자, 정능호(17인)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전부개정 되어「인구전략기본법」으로 2026. 9. 10. 시행 예정이며, 개정 법률은 제3조(정의)에서 “저출생”을 법적 용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산을 장려의 대상으로 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저출생 현상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출산 장려”에서 “저출생 대응”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함(안 제명).

나. 제1조(목적) 중 "출산을 장려"를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으로 함(안 제1조).

다. 제2조제2호 중 "출산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그 정의를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정에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함(안 제2조제2호).

라.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사업)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제8조(협약체결), 제9조(홍보) 중 "출산 장려"를 각각 "저출생 대응"으로 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마. 제5조제1항제1호 중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생축하금 지급"으로 함(안 제5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소관부서: 여성가족복지과

라. 입법예고: 2026. 8. 28. ~ 9. 3. / 7일간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을 장려”를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출산지원금”이란”을 “출생축하금”이란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로, “출산 가정에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으로”를 “가정에”로 한다.

제3조 중 “출산 장려”를 “저출생 대응”으로 한다.

제4조 중 “출산 장려”를 “저출생 대응”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 장려”를 “저출생 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출산 장려”를 “저출생 대응”으로 한다.

1.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생축하금 지급

제8조 중 “출산 장려”를 “저출생 대응”으로 한다.

제9조 중 “출산 장려”를 “저출생 대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출산지원금”이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3.·4.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출생축하금”이란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 ---------- ---------- ---- 가정에 ---------- ---------- ----------. 3.·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다)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저출생 대응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생 대응 ----------.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저출생 대응 ----------.
1.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의 출산지원금 지급	1.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생축하금 지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저출생 대응 -------
제8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또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 저출생 대응 ----------.
제9조(홍보) 구청장은 출산 장려	제9조(홍보) ------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6. 9. 10.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시행예정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생”이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상을 말한다.
2.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3. “인구위기”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감소,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지역별·업종별 인력의 불균형, 학령기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인구전략”이란 인구위기에 대응하거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말한다.
5.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세대 간 및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